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사항
5. 기타 지역 보건의료시책과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의회 의원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재직기간으로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및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안전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 행정담당이 된다.

제9조 (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